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128
-----------	------

2022년 4월 1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0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3. 상정일자

○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2년 4월 1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유학(도농교육교류협력) 등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금 사용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 해당 지방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호).
-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28호로 발의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 타 자치단체나 교육청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안 제2조제1호에 대한 검토

- 국회는 지난 2021년 1월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¹⁾
- 이번 개정은 법률 명칭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우수학교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고, 환경교육 실태 조사를 매년 하여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에 관계된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1.6. 시행)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나. 안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대한 검토

-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은 각각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추가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 집행 시 타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회계로 전출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의 개정 추진은 지난 제30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유학 관련 예산의 집행 방식에 관해 논란이 제기됨에²⁾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1.6., 법률 제17854호, 2021.1.5., 전부개정)

2) 제304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00.),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19쪽 참조.

- 한편, 농촌유학은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6개월(최대 1년) 동안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에서 학업 및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유학 지역 교육청에서 각각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2022년 농촌유학 지원금 지급계획(안)³⁾

거주 유형	지원액(월)		학부모 부담액
	서울시교육청	타 교육청	
가족체류형 (가구당 지원)	자녀 1~3인 → 30~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 차등 지급)	30만원	임대료(지원액 초과분) 및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인터넷비 등)
홈스테이형	30만원	30만원	월 20만원 (숙식비, 인건비, 공과금 유학비에 포함)
지역센터형			

※ 서울시교육청: (교육급여수급가정) 월 20만원 추가 지급 (초기정착금) 학생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 이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부담분을 기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조례 또는 규칙 등에 근거가 부재하여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촌유학 지원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의 예산과목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에서 ‘자치단체 간부담금’으로 변경했으나⁴⁾⁵⁾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

[주요 내용]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한 바,
 - 동 조례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출 계획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 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만일 동 지출계획과 같이 타 시·도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중 타 시·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 추진 현황」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2022.3.14.)

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384호, 2021.8.9. 시행)」 등을 검토했을 때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교육부로부터 제시된 상황입니다.6)

- 따라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사업에 한해 해당 기관 회계로의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농촌유학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과 생태전환교육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 4)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기회 회의 결과 보고」(교육혁신과-3430, 2022.3.10.)
 5)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목 간 비교

기타특별회계전출금(610-02)	자치단체간부담금(330-07)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	○ 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u>대등한 자치단체 상호 간 부담하는 경비</u>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발췌

- 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02(2022.2.7.)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 별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기준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기금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은 기준 제5조제2항 **【별표4】***를 따르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 지출계획에 편성한 자치단체간 부담금(330-07세목)은 이전지출(300그룹)-자치단체등이전(330목)의 세목으로 설정 및 성질별 분류 설명에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위탁)하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세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법령상의 기본 원칙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로 전출하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 및 기금에 편성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근거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의 **【별표11】**에서도 308-07목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751, 2022.3.1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3. (생 략)</p> <p>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u></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p>

② (생략)
제11조(기금의 용도) (생략)

<신설>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